

행정처분기준(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,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을 수 없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라. 시장등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참작하여 2.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.
- 1)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처분일수를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.
 - 2)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의 경우에는 이전명령·개수명령으로,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의 경우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로, 시설폐쇄의 경우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로 경감할 수 있다.

2. 개별기준

가. 사설묘지 설치자 등

위반행위	근거 법령	행 정 처 분 기 준			
		1차위반	2차위반	3차위반	4차위반
1)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	법 제31조 제1호	이전명령	시설전부의 사용금지	시설폐쇄	—
2)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	법 제31조 제1호	개수명령 (설치·관리 인에 관한 사 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 고)	시설 일부의 사용금지	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(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)	시설폐쇄 (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 지 6개월)

3)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	법 제31조 제1호	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	시설 일부의 사용금지	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(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)	시설폐쇄 (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)
4)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묘지 설치 제한 지역에 설치한 때	법 제31조 제1호	이전명령	시설 전부의 사용금지	시설폐쇄	—
5) 법 제18조에 따른 묘지제한면적을 넘거나 시설물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	법 제31조 제1호	개수명령	시설 일부의 사용금지	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(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)	시설폐쇄 (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)
6)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)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나)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	법 제31조 제2호	시설폐쇄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(설치·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)	—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	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(법인이 설치·관리하는 화장시설·봉안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)	— 시설폐쇄 (법인이 설치·관리하는 화장시설·봉안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)
7)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없는 자가 유골 500구 이상의 사설봉안시설을 설치·관리한 때	법 제31조 제2호	개수명령	시설 일부의 사용금지	시설 전부의 사용금지	시설폐쇄
8)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	법 제31조	개수명령	시설	시설	시설폐쇄

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 봉안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	제2호	또는 이전명령	일부의 사용금지	전부의 사용금지 (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 월)	(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 월)
9)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 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 안시설의 설치 제한 지역 에 설치한 때	법 제31조 제2호	이전명령	시설전부의 사용금지	시설폐쇄	
10) 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) 개인·가족자연장지 또 는 종중·문중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하지 아니하 고 조성한 때 나) 개인·가족자연장지 또 는 종중·문중자연장지의 조성 변경신고를 하지 아 니하고 설치한 때	법 제31조 제3호	이전명령 개수명령 (설치·관리 인에 관한 사 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 고)	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	시설폐쇄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	— 시설폐쇄
11)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)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 성한 때 나)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 고 조성한 때	법 제31조 제3호	이전명령 개수명령 (설치·관리 인에 관한 사 항을 위반 한 경우에는 경고)	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	시설폐쇄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(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 월)	— 시설폐쇄 (법인의 경 우 업무정지 6개월)
12)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조성기준 을 위반한 경우	법 제31조 제3호	개수 또는 이 전명령	시설 일부의 사용금지	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(법인의 경	시설폐쇄(법 인의 경우 업무정지 3

				우 업무정지 1개월)	개월)
13)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자연장지 조성 제한 지역에 조성한 때	법 제31조 제3호	이전명령	시설 전부의 사용금지	시설폐쇄	—
14)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· 관리비 신고의무 또는 변 경 신고의무를 위반한 때	법 제31조 제4호	업무정지 7일	업무정지 15일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
15)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·등록을 하지 않거 나 거짓으로 게시·등록 을 한 경우	법 제31조 제4호	업무정지 15일	업무정지 1 개월	업무정지 3 개월	업무정지 6 개월
16) 법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경 우	법 제31조 제4호의3	업무정지 15일	업무정지 1 개월	업무정지 3 개월	업무정지 6 개월
17) 법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 을 강요한 경우	법 제31조 제4호의3	업무정지 1 개월	업무정지 2 개월	업무정지 3 개월	업무정지 6 개월
18)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 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 지 않은 경우	법 제31 조제4호의 4	업무정지 7일	업무정지 15일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
19)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금을 적립하지 않거 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 하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	법 제31조 제5호	업무정지 15일	업무정지 1 개월	업무정지 3 개월	업무정지 6 개월

나. 장례식장영업자

위반행위	근거 법령	행정처분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
1) 법 제29조제1항에 따 른 신고와 달리 시설· 설비 또는 안전기준을	법 제32조제 2항	영업 정지 1개월	영업 정지 2개월	영업 정지 3개월	영업 정지 6개월

위반하여 장례식장을 설치·운영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						
2)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32조제2항	영업 정지 10일	영업 정지 1개월	영업 정지 3개월	영업 정지 6개월	
3)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게시·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·등록을 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32조제2항	영업 정지 15일	영업 정지 1개월	영업 정지 3개월	영업 정지 6개월	
4) 법 제29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32조제2항	영업 정지 15일	영업 정지 1개월	영업 정지 3개월	영업 정지 6개월	
5)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32조제2항	영업 정지 10일	영업 정지 1개월	영업 정지 3개월	영업 정지 6개월	
6) 법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	법 제32조제2항	영업 정지 7일	영업 정지 15일	영업 정지 1개월	영업 정지 3개월	

않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					
7) 법 제29조제9항을 위 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 급하지 않아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 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32조 제2항	영업 정지 7일	영업 정지 15일	영업 정지 1개월	영업 정지 3개월
8) 법 제32조제2항에 따 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营业을 하거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 고를 하지 않고 장례식 장을 운영한 경우	법 제32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	시설 폐쇄			